

IFRS in Focus

IASB, 개정 IAS 12 발표

목차

- 개정사항
- 경과규정
- 시행일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2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요점

- 개정사항은 IAS 4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IAS 12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측정목적상 자산의 장부금액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反證)가능한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 이 가정은 만약 투자부동산이 상각가능하고 처분을 통해서라 기보다는 기간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투자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증된다.
- 이러한 예외규정은 취득자가 사업결합 후에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에도 적용된다.
- 개정사항은 또한 SIC-21 '법인세 -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를 IAS 12로 통합하였다. 즉,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비상각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처분세율(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에 기초하여야 한다.
-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개정사항

2010년 12월, 20일, IASB에서는 IAS 12 개정사항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이하 '개정사항')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시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IAS 12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특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발표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해당 자산을 확정할 수 없거나 결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보유할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과 자본증가(capital appreciation)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처분을 통한 자산의 회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동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다른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회수방식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귀속되는 세무기준액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처분시에는 원가에 물가지수충당금(indexation allowance for inflation)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지만, 상각시에는 상각을 허용하지 않거나 최초원가에 대해서만 상각을 허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실무상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란과 잠재적 불일치를 야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가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이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후속측정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였다.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反證)가능한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가정은 만약 투자부동산이 상각가능하고, 처분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기간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투자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증된다.

논평

새로운 가정은 상각가능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만 반증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중 토지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상각가능한 요소'와 '비상각 요소'로 구분하여 각 요소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IASB가 10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에서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IAS 16 '유형자산' 및 IAS38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도 각각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 중 다수가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IASB는 예외규정을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으로 국한하였다.

논평

투자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서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가정이 반증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 평가손익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업이 처분하기 전까지는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당해 투자부동산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을 통해 장부금액 전체를 회수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경과규정

IAS 12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사업결합에서 최초로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포함하여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소급적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사항은 SIC-21 '법인세 -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의 요구사항을 IAS 12로 통합(반증가능한 가정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즉,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비상각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처분세율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SIC-21은 폐지되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Managing Director – IFRS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Managing Director – IFRS Technical

Veronica Poole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